


*Through the Lookingglass DukYoung 2005*

# 청소년, 우리의 희망

위 크 슝

- 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

2005. 5

주최:  재단법인 덕영재단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Through the Lookingglass DukYoung 2005*

# 청소년, 우리의 희망

위 크 슝

- 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

2005. 5

주최:  재단법인 덕영재단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덕영재단 소개

덕영재단은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기르고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 1996년 6월 13일에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입니다.

## 덕영재단 주요 사업 실적

### ▣ 국내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 장학사업 : 매년 12월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2,270여명에게 장학금 지급
- 정기 장학생 사업 : 매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을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정기 장학생 32명에게 장학금 지급

### ▣ 국내외 학생을 위한 도서보급 지원사업

- 교육만화 출판 보급 : “우리사이 짱이야”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만화 출판, 보급과 비디오를 보급 지원하여 전국 초등학교 및 기관에 무료보급
- 점자악보 출판 후원음악회 : 매년 10월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점자악보 출판 후원음악회를 열어 점자악보를 출판하여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에 무료로 보급. 1999년 바이엘 1·2, 호만 1·2, 2000년 호만 3·4, 가곡집 1·2, 2001년 알프레드초급 1·2·3, 구스타보랑귀누스 1, 2002년 구스타보랑귀누스 2·3, 알테 1·2, 음악통론과 그 실습 1·2, 2003년 알프레드중급 1·2·3, 음악통론과 그 실습 3·4, 2004년 알프레드 고급 1·2·3

###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 교육 경제 및 역사의 교류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연구비 지원 : 1999년 연금 투자 극대화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9-2003 시카고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센터, 2003-2004 위스콘신대학

#### ▣ 국민정신함양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몽사업

- 인성교육 연구비 지원 : 1999년 - 2001년 인성교육 연구, 2000년 - 2001년 Center for Educational Partnerships(음악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1년,

Chenny Troupe(동물을 통한 청소년 문제 치료), 2002년-2003년 Lookingglass Outreach Program(연극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 청소년 인성교육훈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사업

- 어린이 뮤지컬 공연 : 5월 김포대학 어린이 축제에 김포, 강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 2001년 “알라딘”, 2001년 “춤추는 허수아비”(용인지역), 2002년 “팔쥐와 햄버거”, 2003년 “아주 먼 옛날”, 2004년 “검정 고무신”
- 세미나 및 워크숍 : 매년 5월 “Through The Lookingglass/ 청소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000년 시카고시와 공동주최로 “미국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 및 교수 초청 워크숍”, 2001년 부모님들을 위한 워크숍 “자녀의 공격성,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002년 “집단따돌림(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 2003년 “사회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2004년 “가정해체 증가와 상처받는 아이들”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캠프 : 매년 8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무료 캠프 개최.
-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 : 매년 12월 무료 청소년 뮤지컬 공연. 2000년 “방황하는 별들”, 2001년 “2001 방황하는 별들”, 2002년 “언제나 마음은 태양”, 2000년 “Orbert Davis Quintet 초청 재즈 공연”, 2003년 “덕영트리오와 다케시 가케하시 초청 연주회”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나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 (“일식”, “대박”, “태풍”, “시골선비 조남명”, “텔라구아다(De La Guarda)”, “크리스마스 캐롤”, “우장춘 박사의 선택 씨앗”, “강아지똥” 등 다수의 작품 관람).

앞으로도 본 덕영재단은 미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Homepage : [www.dukyong.org](http://www.dukyong.org)

# 일 정 표

## - 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

10:00~10:30	등록	
10:30~10:40	인사말 .....	이사장
	덕영재단 소개	
10:40~11:30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 그 해결과 대처방안” .....	조미숙
11:30~13:00	점심식사	
13:00~13:50	청소년과 가족상담 .....	오윤자
13:50~14:05	휴식	
14:05~14:55	학교폭력 가정해체 아동청소년의 사례연구 .....	소유경
14:55~15:10	휴식	
15:10~16:00	가정해체와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대안 .....	박경현
16:00~16:15	휴식	
16:15~17:00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서의 법적보호장치 .....	문흥수

# 차 례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 그 해결과 대처방안” .....	9
청소년과 가족상담 .....	
학교폭력, 가정해체 아동청소년의 사례연구 .....	
가정해체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대안 .....	39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서의 법적보호장치 .....	
도움을 주신 분들 .....	
*편집 시 페이지 넣어주세요...	

# 인 사 말

덕영재단 주최 2005“청소년 우리의 희망” 워크숍“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와 대처방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고 결혼가정, 왕따,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아가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사랑과 신뢰를, 학교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호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 나(I)에서 벗어나 우리(We)를 알며 성숙하게 됩니다.

30년이 넘는 저의 외국생활 속에 힘들 때 가장 그리웠던 대상은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 학교의 구성원인 친구들을 일상적으로 ‘우리부모’ ‘우리집’ 그리고 ‘우리친구들’ ‘우리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라는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호, 사랑, 신뢰 등을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가장 보호 받아야할 가정과 학교에서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을 체험하고 가출, 약물중독, 정신질환 나아가서는 자살 까지 선택하는 심각한 상태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대처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의 워크숍으로 현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의 답은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부모도 가정환경도 타고난 외모나 능력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우리 청소년들이 주어진 각자 여건 속에서 목표를 향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한 부락이 힘을 합쳐 한 아이를 키운다” 는 아프리카 부락민들의 교육 철학을 되새겨 봅니다.

끝으로 얼마 전 세계 서신으로 보내진 메리 하트만의 시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네  
간혹 가슴앓이가 오고 가지만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일 뿐  
시간이 책장을 넘기면  
위대한 놀라움을 보여주리.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교육인적자원부,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학교사  
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여  
주신 발표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영재단 이사장 전 헬리시아

\*이사장님 싸인 삽인 이름 밑부분에.....

#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 그 해결과 대처방안”

조 미 숙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문학박사
  - 학국가족복지학회 이사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 그 해결과 대처방안”

조 미 숙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문학박사
  - 학국가족복지학회 이사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I. 문제제기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족동반자살, 높은 이혼율, 저출산율, 빈번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높아지는 알콜 및 마약중독율,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가족 확대 등 일련의 사회문제는 한국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일련의 현상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들 문제 중 가정과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친밀과 애정의 근원지인 가정 이 폭력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 및 내용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Wolfe & Jaffe, 1991).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비행은 가족변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문하영, 1991. 김지은 1998.)고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부모갈등상황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그들 자신이 목격한 구체적인 갈등과 학대의 경험이 “자주 싸운다” 또는 “학교생활에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발전되며, 또래 친구들에 대한 폭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Wolfe & Jaffe, 1991; Markward, 1997).

한 예로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경우 폭력행사를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는데 한 학생을 순간적으로 목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가 벌어지고 보복 폭행, 청부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활동도 점차 지능화 되서 중학교 일진회는 금품 갈취나 절도 수법 등을 가르치며 14세가 되기 전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잡혔을 때 행동 요령, 상처 없이 폭행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합을 결성하는가 하면 대규모 행사를 열어 공개 성행위까지 벌이는 등 일탈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주장(한국일보 2005년 3월 9일자 사회면)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부정적인 폭력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 재현하는 행태로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구조적 원인으로 살인적인 입시 경쟁과 학벌사회, 왜곡된 지식위주의 교육과정, 폭력적인 교육 문화, 일상적인 인권의 부재, 교육 공동체의 파괴, 폭력을 권하는 사회, 가정불화 및 가정에서의 폭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의 부족이 제시되고(오마이뉴스. 2005. 3. 30일자) 있지만 특히, 가정불화 및 가정에서의 폭력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Smetana등(1984)도 “아동들은 기능적으로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가족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신념을 학습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mery(1982)도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보다도 아동이 목격한 가족 내 부모의 갈등 수준이 훨씬 더 청소년기의 폭력 및 비행행동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희망적인 연구가 보고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Garmegy(1983,1985)와 Rutter(1987a,b)등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가정폭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는 요인 즉, 중재요인을 밝혀내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의 폭력 및 문제행동치료와 보호를 위한 예방·조기개입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정작 피해자·가해자인 당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존재로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은 다차원적이고 다변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체론적인 시각에서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학교폭력의 개입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아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아동을 피해자인 동시에 미래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

는 조기 개입 대상자로 본다는 점이다.

1997년에 제정되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피해자와 자녀 그리고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안전 보장이나 폭력의 사전예방 및 치료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기차단에는 미흡한 면들이 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다음 세대의 가정폭력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학교폭력 더 나아가 사회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선 문제를 보다 심각화 시키거나 보다 완충시키는 “위기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국내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기초적인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연구 상황을 제시와 함께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1차적인 개입대상 집단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가정폭력 노출 자녀에 대한 개념”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 즉, 우울/불안, 비행행동 및 공격행동, 폭력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종합정리 함으로써 가정폭력연속선상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바라보고자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학교폭력)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상의 이슈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희망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본 발표가 한국에서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분야의 접근을 사후대책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 치료개입 차원으로 그 문제해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정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기준으로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폭력,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폭력,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폭력, 형제가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형제폭력의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아내구타 유형의 부부폭력이 가장 빈번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는 가정폭력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신체적인 공격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왔다(조미숙, 2002). 이들 연구 분야는 대략 다음 네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상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로서 아내구타 발생빈도의 조사나 상담시에 나타난 아내구타의 실태파악 등으로 아내구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연구(김광일, 1988(a), 1998(b), 1990; 이관숙, 1988; 김지영, 1995; 차준구, 1988).

둘째, 아내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서 생물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김혜선, 1995).

셋째, 학대받는 아내의 정신상황의 변화, 예컨대 노예화의 과정 등을 연구한 분야로서, 경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문경서, 1993).

넷째, 대책에 관한 연구들인데,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대책과 사회정책 등의 연계 체계를 이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김광일, 1988(b),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3; 신은주, 1995; 허남순, 1993)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현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 규명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인 아내에 관한 연구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근래에 들어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폭력에 대한 관련 서비스연계 체계가 지엽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주된 이유는 첫째, 부모에 대한 직접개입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며, 둘째,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Kashani & Allan, 1998). 실제로 조미숙(1999)은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영향력 검사에서 우울, 불안, 비행 및 공격행동, 그리고 학업수행 등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동의 발달상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한바 있다<sup>1)</sup>.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다음 세대의 가정폭력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학교폭력 더 나아가 사회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국내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아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개입 전략을 세우는 일은 장·단기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문제에 개입하고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이하 ‘쉼터’)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 전국 1,200여 쉼터 중 약 800여 쉼터에서(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1991, Lehmann & Carlson, 1998. 양혜원, 2002. 재인용) 전문적인 아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쉼터에 이어 일반지역사회기관에서도 가정폭력 노출 아

---

1) 일반가정 자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간에 심리·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본 조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여부가 회귀분석에 입력되었을 때 우울·불안 변이에 14.4%를 더함으로써 가정폭력여부는 자녀의 우울·불안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자녀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사에서 가정폭력여부가 회귀분석에 입력되었을 때 공격행동변이에 17.96%를 더함으로써 가정폭력여부는 자녀의 공격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사에서 가정폭력여부가 회귀분석에 입력되었을 때 사회성 변이에 0.69%를 더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와 비 폭력가정 자녀간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P=0.1032$ ).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조미숙은 사회성척도 예를 들면 항목 중 친구의수,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문항에 대하여 단선적인 비교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가정폭력이 자녀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검사에서 가정폭력여부가 회귀분석에 입력되었을 때 학업수행 변이에 7.7%를 더함으로써 가정폭력여부는 자녀의 학업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Peled & Davis, 1995에서 재인용)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개념 및 문제행동

먼저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행사하는 폭력은 아내구타, 아내학대 혹은 아내폭력 등으로 표현된다. 이들 각각의 용어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Germain(1984)의 정의에 의하면, 구타(battering)란 신체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인데 비해, 학대(abuse)란 사회적 고립, 가정에 구속, 경제적 박탈, 언어적 폭언 및 경멸과 같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정신적·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등 아내구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Germain의 정의처럼 많은 학자들은 학대에 비해 구타가 보다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Walker(1979)도 아내구타란 아내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아내가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남편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무력으로 보고, 이 경우 적어도 폭력주기를 2회 이상 겪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아내구타가 일어날 때 아동학대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며(Suh & Abel, 1990)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의 경우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McCloskey, et al, 1995; Rosenbaum & O'Leary, 1981(a)).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아동학대와는 독립적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받는 영향에만 초점을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에 비추어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개념을 조작화 시킨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는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이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2회 이상” 일어나는 가정을 “폭력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자신이 직접 구타를 당하지는 않고 어머니의 구타를 목격하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라고 정의 한다. (조미숙, 1999)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행동을 어떻게 조작 화시켜 접근할 수 있을까?

Achenbach와 Edelbrock(1991)은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그리고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내재화 문제에는 위축



(withdrawn), 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 사고의 문제(thought problems), 주의집중 문제(attention problems)등으로 정의하면서,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현화 문제에는 비행행동, 공격행동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Achenbach와 Edelbrock(1991)은 심리장애의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계획하거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취약한 점을 보완해 주고 남다른 장점이 있는 측면을 살려주는 것이 실제로 소하고 있는 임상적 증상을 다루어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능력은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회성(social), 교과목 수행정도나 학업수행상의 문제여부를 살펴보는 학업수행(school performance),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입한 집단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사회활동(school activitie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Kashani & Allan(1998)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Jaffe와 그의 동료들(1986 (a))도 일반가정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남아와 여아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적 능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또한 Fantuzzo와 그의 동료들(1991)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적 능력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그 밖의 여러 학자들이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Markward, 1997; Rosenbaum & O'Leary, 1981(a), 1991(b); Wolfe, et al., 1985; Jaffe, et al., 1986(b)). Achenbach와 Edelbrock(1991)의 도구의 또 하나의 유용성은 문제행동에 대한 기준점(예: 내재화문제의 임상적 기준점 70이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문제가 다차원적이고 다변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사회복지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예방 및 조기 치료개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3. 기존 연구에 대한 도전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부적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논의되어 왔다(Moore, 1975; Hershorn & Rosenbaum, 1985; Rosenbaum & O'Leary, 1981 b; McCloskey, Figuerdo & Koss, 1995). 즉,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폭력의 세대전이, 비효과적인 양육모델,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부족한 심리·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 비행 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즉,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3가지 차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최근 연구에서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과 폭력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아동, 그리고 쉼터(shelter)에 거주하는 폭력가정의 아동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폭력가정의 아동은 내재화된 문제, 특히 우울,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Fantuzzo et al., 1991; Hughes & Barad, 1983). 불안증상도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과 사춘기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Carlson, 1990).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춘기 초기에 있는 남아의 경우 자살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arlson, 1990).

#### 2)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상호간에 폭력이 있을 때 특히, 학령 전 아동일 경우, 발달상에 행동문제의 위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ntuzzo, et al., 1991; Hughes & Barad, 1983; 조미숙, 1999). 예를 들면, 분노와 디스트레스는 부모 간에 폭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의 아동에게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Cummings, et al., 1989). 그들 자신이 목격한 구체적인 갈등과 학대의 경험이 “자주 싸운다” 또는 “학교생활에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발전되며, 또래 친구들에 대한 폭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Wolfe & Jaffe, 1991; Markward, 1997). 또한 학령기 아동과 사춘기 소년의 경우에도 발달상에 있어서 외현화 문제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Porter & O'Leary, 1980; Wolfe, et al., 1985). 예를 들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사춘기 소년일 경우 가출할 위험이 보다 높아진다 (Carlson, 1990). Rosenbaum과 O'Leary(1981(b))의 초기연구에서는 폭력가정의 아동과 두 개의 통제집단 아동(예; 불화는 있지만 비 폭력가정과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간에 행동장애나 성격장애 증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보다 많은 행동적·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3)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일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사회적 능력이 보다 낮았으며 사회적 능력에 보다 많은 손상을 입고 있었다(Fantuzzo, et al., 1991; Wolfe, Zak, Wilson, & Jaffe, 1985).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기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여성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수용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사회적 부적응(social mal-adjustment)이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가 나쁘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능력이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ashani & Allan, 199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산물을 단선적으로만 비교해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사이에서의 개인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를 잘못해석하면 폭력가정 아동을 모두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 집단인 것처럼 오도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가정폭력의 상황에서도 어떤 아동들은 보다 적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영향을 극복하며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도 알 수 없다.

최근에 기존의 논의에 반박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O'Keefe, 1998).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에서 아동기 때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나중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 간에 어떠한 관계도 없거나 단지 경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이 나

오고 있다(DeMaris, 1987; Foo & Margolin, 1995; Gwartney-Gibbs, et al., 1987). 이에 덧붙여 중재요인을 고려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한 예로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의 관계를 인지적 맥락모델(cognitive-context model)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부부갈등은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이해와 평가라는 매개과정을 통해 아동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 대처방식의 결과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Fincham과 Osborne(1993)도 부부불화와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과 전반적으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 관련 정도는 미비하며, 이 둘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재요인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라는 이유로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 집단으로 몰고 가는 논리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예방 및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 Ⅲ.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요인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재요인들을 밝혀냈는데 그 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O'Keefe, 1998). 먼저 이런 변수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본 다음, 지역사회중심의 폭력 예방 및 치료개입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보호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중재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는 요인은 첫째로 “부모의 양육태도”요인이다. 가정폭력이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부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와 성격 요소, Garmezy, 1983)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인 예측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받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부모와의 관련변인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매맞는 아내들은 신체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기 쉬우며, 경제적인 위기·주거의 위기와 같은 다른 생활상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결국,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Walker, 1979).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한 어머니의 아동들은 정신분열 증상을 가진 부모의 아동처럼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의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Beardslee, Bemporad, Keller & Klerman, 1983; Cohler, Gallant, et al., 1983; Emery, Weintraub & Neale,

1982). 즉 부부불화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유발하여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불일치하고, 부적절한 태도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이 발달된다는 것이다(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두번째로, “가족간의 갈등” 요인이다. Davies와 그의 동료들(1994)은 일반적으로 부부갈등이 분노나 공격성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특히 아동 앞에서 이루어질 때, 아동양육에 관한 불일치가 포함될 때, 그리고 갈등이 만성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아동들이 더욱 심한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 Osborne, 1993). Katz와 Gottman(1993)은 부부간의 적대적인 문제해결 양상이 5세 유아에게 있어서 3년 뒤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Jouriles, Barling과 O’Leary(1987)는 아동의 문제는 부모-자녀간의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자아존중감” 요인이다. O’Keefe(1998)는 높은 수준의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 집단과 비문제행동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들고 있다. Cicchetti와 그의 동료들(1993) 그리고 Neighbors와 그의 동료들(1993)등도 부모간에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적응 유연적인 집단과 문제행동 집단 간에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보고하면서, 한 영역(예; 학업수행)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은 그들 스스로 가정폭력을 보다 유연하게 "피하고(escape)" 자신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가족관계에서의 지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수준, 교육정도 등의 구조적 측면과 인간 관계적 측면 등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에 대한 가족원의 지지정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족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건강하고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구조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Mena, et al., 1987).

다른 연구에서도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상대적인 취약성과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능력은 상당부분 환경의 지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가족의 영향이 크더라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Murphy & Moriarty, 1987; Ford, 1992, 조미숙, 1999). 따라서 폭력가정의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일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영향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다(장연집 외, 1997). 첫 번째 가설은 직접효과 가설로 사회적인 지지는 높은 스트레스 상태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완충가설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 선후배, 선생님,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사회적인 모임을 통해서 혹은 좋은 친구를 통해서 얻는 정보, 지지적인 조언이나 물질적인 도움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연집 외, 1997).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는 또래친구나 그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학교 선생으로부터의 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재변인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거주환경의 위험요소 : 가정폭력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Osofsky와 그의 동료들(1993) 그리고, Richters와 그의 동료(1993)가 수행한 예비 연구에 따르면, 열악한 거주지역환경이 아동의 정서적 기능과 행동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거주 환경적 위험요소는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주거는 아동의 초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특히 주거 밀도는 인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회적 밀도가 높은 장소에 오래 노출되는 경향은 동기요소의 결핍과 관련되어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이 있다(Baum, Aielli, Calesnick, 1978).

또한 범죄율이 높고,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하여, 다양한 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Dryfoos, 1990; McLoyd, 1990; Hernandez, 1993, 박현선, 1998; 재인용).

이상의 여섯 가지 변수 요인 외에 “자녀의 성별” 요인은 우리 사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집단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밀도 있는 요인선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과제영역이다.

인간은 생태적, 환경적 영향에 의해 남·여가 달리 발달하는가 하면, 비슷하게

발달하는 면도 있다. 특히 아동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남녀가 달리 적응해 가는 데, 일반적으로는 남아가 여아 보다 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는 아니다. 때로는 남아가 더 유능하게 적응을 하는 면도 있으며 심지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외에, 아동이 부모와 상호 작용함에 있어서 질적인 성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모와 남아 자녀의 반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간다(Smith, et al., 1977).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도 자녀의 성(sex)과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응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응 관련 변수도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성에 따라 독특한 한국의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조기 치료개입 전략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기상황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위기 요인 혹은 보호요인에 따라 적응상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족관계에서의 지지”,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중 “학교선생님의 지지” 등은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대인관계기술”이 적합하게 활용되지 못할 때,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관심과 애정이 지나치게 높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중 “또래 친구관계”, “거주환경의 위험요소” 등은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IV. 가정폭력 연장선상에서 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해결과 대처방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해결을 위한 서비스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

2) 조미숙(1999)은 심각한 폭력가정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낮은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구분해주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

인식 부족이나 필요한 자원부족 등의 문제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체계적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도 사후 중심적·응급 처방적 성격을 띤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극히 일부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쉼터 중심의 보호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김인숙, 2000).

따라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적응해 나가는 다양한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그림을 바탕으로 폭력에 대한 개입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합적”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전달체계 형성을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확보와, 폭력피해 발생 단계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까지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미래에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을 조기차단 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예방개입 전략을 의미한다.

예방개입의 목적은 첫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며, 둘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치료하거나 보살피는 것 역시 아동의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한 방법이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지적인 개입”이다. 즉 예방과 치료의 개념이 상호관련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예방개입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개입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1, 2, 3차 예방을 보는 입장은 다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1차 예방을 일반 집단을 대상 집단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두 입장이 동일하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일반주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2차 예방과 3차 예방을 정의하는 데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한 가지 입장(Hampton, 1993)은 2차 예방을 문제의 초기 사인이 나타난 직후 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3차 예방이란 일단 문제가 드러나고 위해를 야기 시킨 경우 하게 되는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만성적일 수 있는 경우의 개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재활 및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또 다른 입장(안동현, 1999)은 2차 예방은 폭력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개입, 3차 예방은 사후 적응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개입전략을 조기에 구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선별하는 일이며 이들 중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 집단과 비문제행동 집단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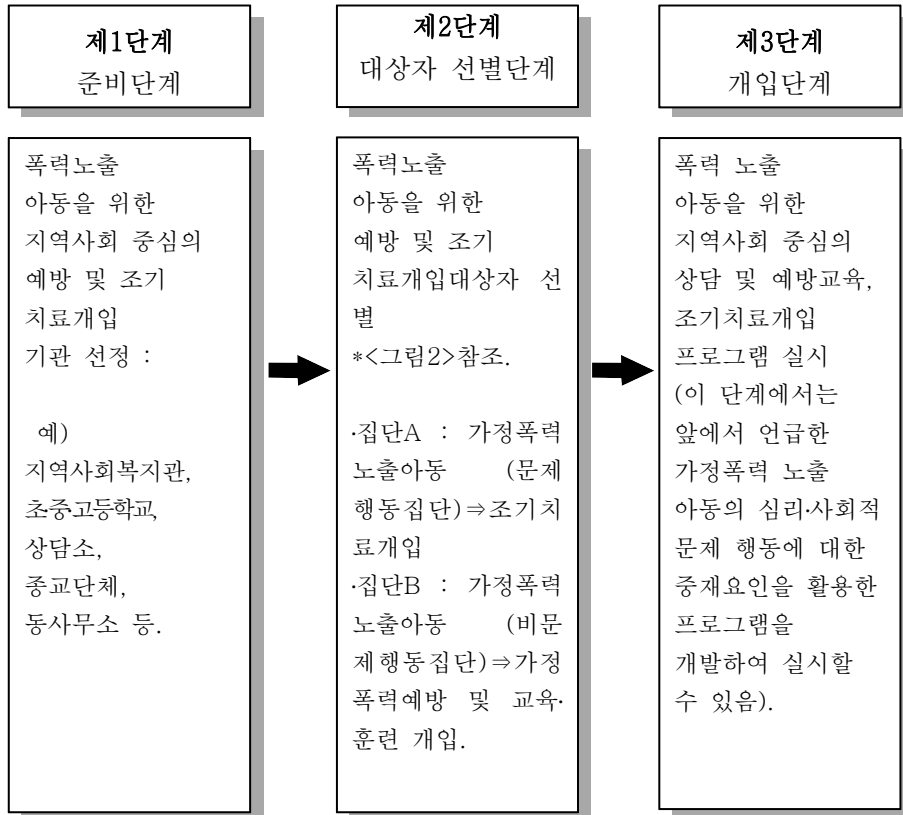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여기서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역할은 폭력 방지를 위한 전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예방 및 치료개입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그림1>과 같이 “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예방 및 조기치료개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초·중·고등학교, 상담소, 종교단체, 동사무소 등과 같이 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예방 및 조기치료 개입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 기관들이 선정되면 제2단계로 <그림2>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하여 개인적, 가정적, 사회·환경적인 중재요인들을 고려하여 폭력 노출아동 중 문제행동 집단과 비문제행동 집단으로 개입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문제행동 집단(집단A)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정폭력 조기치료개입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비문제행동 집단(집단B)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교육·훈련 전략이 구상될 수 있다. 다음은 제3단계로 실제 프로그램을 개입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폭력 노출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요인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입될 수 있다.

집단 A의 프로그램의 예로는 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개별적 접근, 집단적 접근, 가족 치료적 접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사회사업 실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이 과거에 경험했던 폭력 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새롭고 보다 적응적인 반응을 개발시킨다.
- 둘째, 바람직한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친다.
- 셋째, 표출된 행동에 대한 아동 자신의 책임성을 탐색하도록 한다.
- 넷째,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폭력행동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 다섯째,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높여준다.

집단 B의 프로그램의 예로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지지 기술훈련”, “아동을 위한 스트레스 면역훈련 프로그램”,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지킴이 프로그램”, “학교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등을 실시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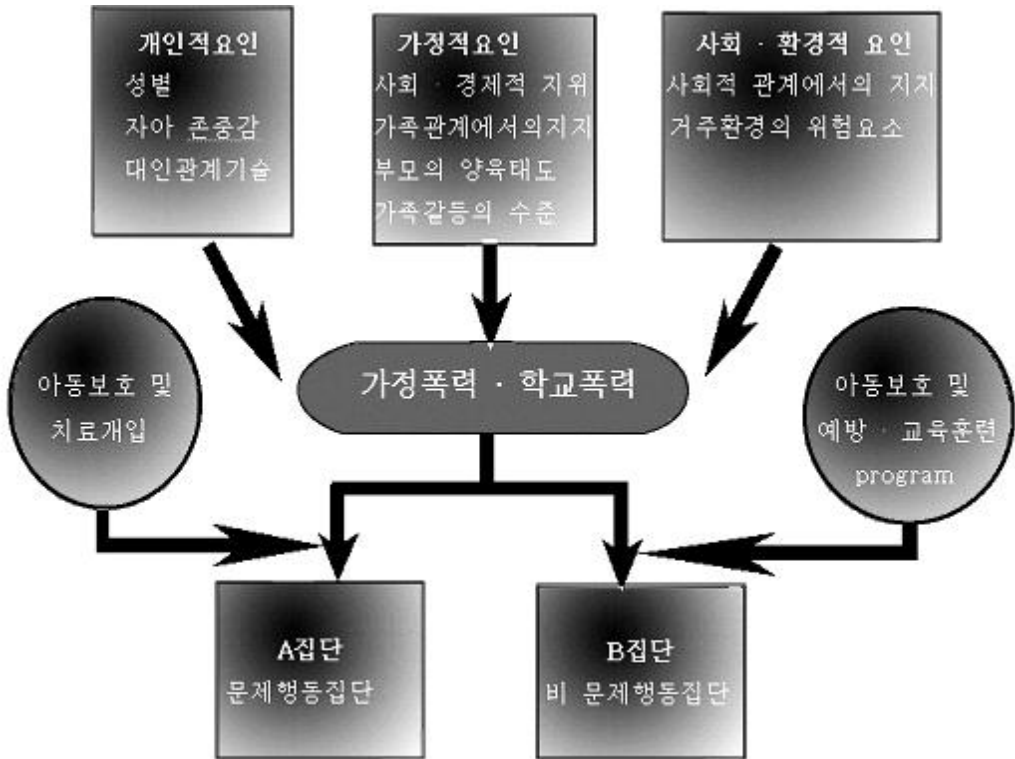
<그림1> 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예방 및 조기치료개입 모형

<그림 2> 학교폭력 · 가정폭력예방 및 조기치료 개입대상자 선별모형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의 폭력 및 문제행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실태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의 논의상의 이슈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조기치료 개입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에 개입하는 목적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전략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조기치료 전략의 몇 가지 예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이 때의 교육 내용은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 및 영향, 아동과 부모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안내, 지역사회개입의 필요성 및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에 관한 홍보 등이 지역사회복지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과 학교를 통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부모가 폭력위기를 관리하는 문제해결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교육 ·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정교한 도움의 절차 및 체계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및 “유해업소 시민감시단 조직활동” 같은 구조

적인 개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교육프로그램의 예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특성과 반응에 대한 설명”,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지킴이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선생님과 연계하여 이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①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②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③ 학교폭력 해결 과정은 청소년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되 시민사회진영 전체 및 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등이 있어야 한다(오마이뉴스 2005. 3. 30일자).

여섯째,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기관들로는 경찰, 종교단체, 학교, 병원, 여성단체나 지역방송국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사업가들이 이러한 단체들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예방·경감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사회가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예방대책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폭력대책이 사후서비스/3차 예방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관련 재원의 대부분이 이쪽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1, 2차 예방의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덟째, 이와 동시에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예방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빠른 시일 내에 폭력관련예산

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기금”을 조성하거나 학회나 협회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관련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 편저, 1988(a),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광일, 1988(b),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제9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광일, 1990,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인숙,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pp. 275-303.
- 김지영, 1995,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미간행)
- 김혜선, 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문경서, 1993,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 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미간행).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은주, 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미간행).
- 오마이뉴스, 2005년 3월 30일자 사회면.
- 양혜원, 2002,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적응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관숙, 1988, “아내학대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미간행).
- 장연집 외, 1997,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pp142-143.
- 조미숙, 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조미숙 외, 1999, 「가정폭력과 사회복지」, 학지사.
- 조미숙, 2002,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전략”, 200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차준구, 1988, “가정폭력(I): 아내구타”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일보 2005년 3월 9일자 사회면.
- 허남순, 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을유문화사.
- Achenbach, T. M.,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um, A., Aielli, R., & Calesnick, L. E., 1978, “Crowding and personal Control: Social density and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pp.1000-1011.
- Beardslee, W. R., et al,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pp.825-832.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pp.285-299.
- Cicchetti, D., et al.,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pp.629-647.
- Cohler, B. J., et al., 1983, *Social adjustment among schizophrenic, depressed, and well mothers and their school-aged Children.*, In H. L.
- Conger, R. D., et al., 1984, "Perception of child, 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pp.2234-2247.
- Cummings, E. M. et al.,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pp.1392-1404.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pp.387-411.

- DeMaris, A., 1987, "The effect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 Fam.*, Issues 8, pp.291-305.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ery, R., Weintraub, S., & Neale, J. M., 1982,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the school behavior of children of schizophrenic, effectively disordered, and normal par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pp.215-228.
- Fantuzzo, J. W., & Lindquist, C. U., 1989, "The Effects of Observing Conjugal Violence on Childre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pp.77-94.
- Fantuzzo, J. W., et al.,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9, No.2, pp.258-265.
- Fauber, R. L., et al., 1990,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pp.1112-1123.
- Fauber, R. L., & Long, N., 1992, "Parenting in a broader context : A reply to Emery, Fincham, and Cummings (199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pp.913-915.
- Fincham, F. D., & Osborn, L. N., 199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 Retrospect and prospe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pp.75-88.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 Fam.* Vol. 10 : pp.351-375.
- Ford, M. E., 1992, *Motivating human: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 Garm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43-84)*. New York: McGraw-Hill.
- Gelles,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Publishers Inc.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pp.267-290.
- Gwartney-Gibbs, P. A., Stockard, J., and Brohmer, S., 1987, Learning courtship violence: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 Relat.*, 36, pp.276-282.
- Hamburg, D. A., 1991, *Health and behavior: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contemporary problem. In R. Jessor(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Science: Colorado lecture (177-200)*, New York: Westview press.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shorn, M., & Rosenbaum, A., 1985, "Children of marital violence :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pp.260-266.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9, "Play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pp.26-49.
- Hughes, H. M., & Barad, S. J., 1983,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 in a battered Women's shelter : preliminary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pp.525-531.
- Jaffe, P., et al., 1986(a), "Similarities in behavioral and 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to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pp.12-146.
- \_\_\_\_\_, 1986(b), "Family Violence and Child Adjust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Girls' and Boys' behavioral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pp.74-77.
- Jouriles, E. N., barling, J., & O'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pp.165-173.
- Kashani, J. H., & Allan, W. D., 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age publication, pp.33-84.
- Katz, L.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940-950.



- Kerig, P. K., Cowan, P. A., & Cowan, C. P., 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931-939.
- Lazarus, R. S., 1963,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 Markward, M. J., 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pp.66-70.
- McCloskey, L. A., Figuerdo, A. J., & Koss, M. P., 1995, "The effects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pp.1239-1261.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311-346.
- Mena, F., Padilla, A., & Maldonado, M., 1987, "A 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Journal of Behavior Sciences*, 9(2), pp.207-225.
- Moore, J. G., 1975, "Yo-yo Children: Victims of marital Violence.", *Child Welfare*, 54, pp.557-566.
- Murphy, L. B., & Moriarty, A. E., 1987,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Neighbors, b., Forehand, R., & Mcviar, D.,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arent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pp.462-471.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3, No. 1, pp.39-57.
- Osofsky, J. D., et al., 1993, "Chronic Community Violence : What is happening to our children", *Psychiatry*, 56, pp. 36-45.
- Peled, E., & Davis, D., 1995, *Group Work with Child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A practitioner's Manual*. Thousand Oaks, CA: Sage.
- Porter, B., & O'Leary,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pp.287-295.

- Richters, J. E., & Martinez, P., 1993, "The NIMH Community Violence project : 1. Children as Victims and Witnesses to Violence.", *Psychiatry*, 56, pp.7-21.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a),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pp. 63-71.
- \_\_\_\_\_, 1981(b) "Children :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4), pp.692-699.
- Rutter, M.,1987 a. Psycho 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57, 316-331.
- Rutter, M.,1987 b.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 J. Psychiatry* 147 : 598-611.
- Smetana, J., Kelly, M., & Twentymen, C. 1984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judgements of moral and Soci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277-287.
- Smith, P. K., & Daghish, L., 1977, "Sex differences in parent and infant behavior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48(4), pp.1250-1254.
- Straus, M. A., 1991 September 21-23, Children as witness to marital violence: A risk factors for life long problem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merican men and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Ross Roundtable*, Washington DC.
- Suh, E. K., & Abel, E. M., 1990, "The impact of spousal violence on the children of the abuse.", *Journal of Independent Social Work*, 4, pp.27-34.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 Wolfe, D. A., & Jaffe, P.,1991.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as determinants of child psycho pat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282-299.
- Wolfe, D. A., et a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3, N.5, pp.657-665.

## 청소년과 가족상담

오윤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정학박사
-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교수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청소년과 가족상담

오윤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정학박사
-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교수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크며 이러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전수하게 되므로 문제행동의 다세대 적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된다.

발달상 가족과 분리되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과잉기대’(장재홍 외, 2000)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었음을 볼 때, 청소년기의 가족환경은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의 1차 환경이 되는 가족은 물리적·정서적 공간을 점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체 이상의 개념으로서 나름대로의 규칙, 역할, 세력, 구조, 의사소통의 유형을 발전시켜온 하나의 사회적 체계이다(Goldenberg, 2000). 다시 말해서, 가족은 하나의 체계(system)이며 이러한 체계는 여러 가지로 기능하면서 체계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기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가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1950년대 이후 가족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간관계의 병리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상담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 왔던 것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그가 속한 체계 자체의 결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개인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이렇듯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려면, 정서적으로 뒤엉킨 살아 있는 생물체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김유숙, 2002).

우리가 흔히 말하거나 들어왔던 나쁜 부모가 문제의 자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에 대하여 직선적 인과관계로 이해했던 바이고, 이를 사실에 접근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인과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차원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문제는 가족의 생활체계안에서 발생하는 과정, 즉 가족안에서 가족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으로 문제를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며 서로의 안전, 휴식, 영양, 성장, 성, 애정의 욕구 등을 일차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특히 이해를 서로 인정하는 관계형성을 하면서 강한 정서적 결합이 동반되기도 하며 반면, 복잡한 관계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과 가족이 생활해가면서 특별한 인생사건이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잘 적응이 되지 않아 장애로 바뀔 수 있으며, 지금까지 가족내에서의 기능적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다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지원 받아야 한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접근방법이 새로워지고 있는 가족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개념, 가족문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있어야 함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족상담에 있어서 가족의 개념

### 1. 가족의 특성

가족상담이 가족을 체계로 보면서 체계 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개입해 가는 이론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상담에서는 특별히 일반체계이론에서 유래한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가족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Barker, 1986).

- 1)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성을 지닌 체계이다.
- 2) 가족체계의 움직임은 어떤 일반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3) 모든 가족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심리적 경계가 중요하고 경계의 특성에 따라 가족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4) 가족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가족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5) 가족체계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장이나 진화가 가능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
- 6) 가족체계기능 중에는 체계간의 의사소통이나 피드백 기능이 중요하다.
- 7) 가족속의 개인의 행동은 직선적 인과관계 보다는 순환적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다.
- 8) 다른 열린 체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체계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9) 가족체계는 하위체계에 의해서 성립되며, 또한 가족체계는 보다 큰 상위체계의 일부분이다.

## 2. 가족상담과 가족문제

가족상담에서 문제라는 것은 개인의 내적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맥락속에서 이해함이 필수적이다. 개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개인적인 결함 모형에서, 관계와 관계 사이의 역기능을 파악하는 대인관계적인 모형으로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이란 개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대인관계적 모형의 관점을 가져야만 문제의 기능과 행동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가족 전체 사이에 존재하는 고정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개입이 곧 가족상담이다. 즉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족 자체가 가진 회복력에 의해서 가족과 개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가족상담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며 그 체계속의 상호 교류양상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전문적인 방법이다. 이 때 상담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 행동이란 개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행동은 가족의 상호작용, 가족 역사, 가족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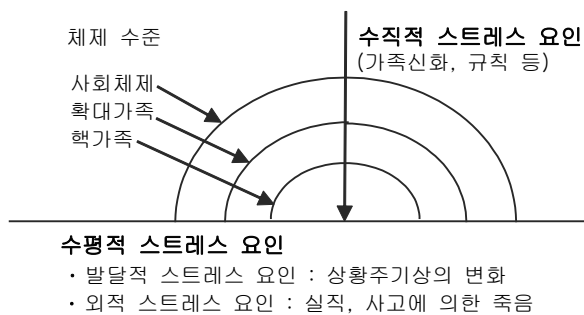
## Ⅲ. 청소년기 가족

### 1. 가족과 가족생활주기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 특성과 발달과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가족을 동일한 형태로 평가하여 상담에 임하게 되면 증상이나 문제해결에 또 다른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상담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 스트레스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수직적 요인과 수평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더욱 복잡하다.



<그림 1> 가족스트레스 유형

먼저 수직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가족의 태도, 기대, 규칙 등 세대에 따라 전수되는 관계와 기능 양상을 포함한다. 즉 원가족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이미지, 가족신화, 가족규칙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 수평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 자녀의 출산, 입학, 결혼과 같이 가족이 발달하면서 겪게되는 사건과 생활주기에 혼란을 가져오는 실직, 사고에 의한 죽음과 같이 예측 할 수 없는 사건으로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두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은 상호 관계가 있으며, 가족상담자는 가족생활주기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상담 준거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 2) 가족생활주기 특성 및 발달과업

현재 가족이 처한 주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정서적 과정과 그에 따른 발달과업을 알 수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가족생활 주기 단계	전환의 정서적 과정: 주요 원리	발달을 위해 필요한 가족지위의 이차적 변화
1. 결혼전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재정적 책임을 수용	a.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분화 b. 친밀한 이성관계의 발달 c. 일과 재정적 독립 측면에서 자신을 확립
2. 결혼적응기	새로운 체계에 대한 수입	a. 부부체계의 형성 b.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확대가족, 친구와의 관계 재정비
3. 자녀아동기	새로운 가족 성원을 수용	a. 부부체계에 자녀를 위한 공간 만들기 b. 자녀 양육, 재정, 가사일에 공동참여 c. 부모, 조부모 역할이 포함되도록 확대가족과의 관계 재정비
4. 자녀청소년기	자녀의 독립과 조부모의 허약함을 고려하여 가족경계의 융통성을 증가	a. 청소년 자녀가 가족체계에서 출입이 자유롭도록 부모-자녀관계를 변화 b. 중년기 부부의 결혼 및 진로문제에 재초점 c. 노인세대를 돌보기 위한 준비시작
5. 자녀독립기	가족성원의 증감을 수용	a. 부부체계를 2인군 관계로 재조정 b. 성장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성인대 성인의 관계로 발전 c. 사돈과 며느리, 사위, 손자녀가 포함되도록 관계 재정비 d. 부모 또는 조부모의 무능력과 죽음에 대처
6. 노년기	역할변화를 수용	a. 신체적 쇠퇴에 직면하면서 자신과 부부의 기능과 관심사를 유지 b. 다음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 c. 연장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d. 배우자, 형제, 친구의 죽음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며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

## 2. 청소년기 가족

### 1) 청소년기 가족

개인이 발달주기에 따라 태내기로부터 노년기 발달하듯이, 가족 역시 시간에 따라 삶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생활주기를 가지고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과거의 가족생활, 수행하려는 과업, 가족이 지향



하는 미래의 맥락에서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것들을 인식하게 해 준다.

청소년기 가족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로 대별하여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청소년기 가족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기대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중년기 가족이므로써, 중년기 부모는 자신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는 시기에 놓이게 되며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년기 부모들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적응해야 하고, 소원해지기 쉬운 부부관계를 심리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녀의 학업 수행이나 문제로부터 보호 양육해야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2)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최근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데 첫째, 청소년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조언은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에 나타나는 가벼운 갈등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귀가시간, 옷차림, 방청소 등 사소한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 3) 청소년기 가족의 문제

가족구성원 각각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부부,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녀에 대한 것들이 해당되며 관계차원에서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부정적 양육태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에 관계된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청소년과 가족상담

미국의 보고서(Gurman & Kniskern, 1978)에 의하면 200여 가족의 상담

사례분석 결과에서 약 1/2이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이었고, 아동인 경우 71%가 가족상담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다른 연구 (Baron, 1976)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격적 행동마약, 절도, 범죄 등 이상행동의 소유자들은 개인상담 보다는 가족상담을 받은 경우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 1. 가족상담의 발달 배경

가족상담은 대별하면 2가지의 발달배경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그동안의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심리적 내적인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가족의 지대한 영향력과 병적으로 지배했던 관계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자녀의 소외와 박탈감, 일탈행동 등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 요인으로는 학문적 요인으로서 인간문제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시작, 인간의 문제를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개인주의적 전통적 접근법을 넘어서 생태학적인 세계관으로 인간문제를 다루는데 가족 사회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김혜숙, 2005)이 대두된 것이다.

## 2. 가족상담의 특성

### 1) 가족들의 상호관계성

개인상담과 달리 가족구성원들이 상호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가족상담은 관계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상담은 가족의 문제나 행동의 변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이란 관계성 내에서 상호간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 2) 개인 문제에 대한 관점

개인의 문제나 행동이 개인적 차원의 장애라고 보기 보다는 가족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인 시스템안에서 생존의 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여지는 청소년의 어떤 행동적 특성을 이해할 때

개인 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3) 가족의 고정적인 패턴 양식

결혼과정 및 자녀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부부로서의 부모는 가족의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한다. 가족 안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일방적인 권력구조와 역할 등이 변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이 갖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4) 가족의 신화

가족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심층적 자료없이 가족에 대한 자동적인 사고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반적인 전제들이 가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신화(myths)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보다 더 안정적이고 화목한 집단이었으리라고 믿는 것이고, 정상 가족에 대한 것들, 가족들은 모두 동일한 욕구와 경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그것에 해당된다.

### 5) 가족의 위기

가족에는 지속적인 관계성, 변성, 가변성, 예측불가능성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족은 항상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연속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놓이게 된다. 가족의 위기는 종종 하나의 위기 상황이 다른 위기 상황으로 더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6) 가족의 세대간의 역동

가족에서 개인의 가치, 행동방식, 대처방식, 부모와의 관계, 친밀감 정도, 가족구성원간의 화목 등은 개인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삶의 방식과 대처방식들을 터득하고 자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다. 세대간의 역동성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족상담의 중요한 기본관점이다.

## <표 2>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의 차이

	개 인 상 담	가 족 상 담
병리적인 초점	개인, 정신 내면의 과정	개인을 둘러싼 가족·사회체계 문제란 사회맥락 속에서 의미있는 사람과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
상담개입 대상	개인, 개인의 과거와 현재	가족체계, 관계의 변화
상담의 단위	개인	체계의 많은 구성원
상담 기간	많은 시간 필요	관련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상담경향

### 3. 청소년상담에서 가족상담 접근의 필요성

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가족상담적 접근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기는 환경의 크고 작은 변화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서 가족환경 자체 변화로 청소년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심리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족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감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개인내적인 문제가 이기 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이나 혹은 다른 주변의 사회적 환경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문제행동을 촉발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외적인 요인들을 함께 다루어 주는 것 필요한 것이다(김진숙외, 1999).

### 4. 청소년기자녀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

#### (1) 청소년자녀를 둔 가족의 발달과업과 스트레스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발달단계가 스트레스와 위기에 가장 취약한 단계로, 개인발달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 이른 자녀들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서 오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부모들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맞게 되는 여러 내적, 외적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 (2)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

청소년기자녀 가족상담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통제하는 개입전략 뿐만 아니라 행동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의 관계적 측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문제의 악순환(the symptomatic cycle)

문제의 악순환(the symptomatic cycle: Micucci, 1998)이란 어떤 가족체계 안에서 문제나 증상이 촉발,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문제의 악순환 발생이 쉬운 가족형태나 요인은 밀착, 격리, 미해결된 부부갈등, 비효과적인 조력방법 등이 있다.

#### ① 밀착(enmeshment)

밀착이란 가족구성원들간의 심리적 경계가 애매하여 서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가족구조이다. 밀착된 관계에서는 부모-자녀 사이에 명확한 세대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가족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며, 각 개인의 문제가 과도하게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어 서로 과민하게 반응하게 한다.

#### ② 격리(disengagement)

격리란 밀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원들간의 심리적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감정적인 교류가 결여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부족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제각기 고립되어 있는 가족구조를 말한다.

#### ③ 미해결된 부부갈등

미해결된 부부갈등이란 자녀가 문제행동이나 증상이 표면화될 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부모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갈등상황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약되고 그 가운데 자녀의 문제행동은 더욱 심각해진다.

#### ④ 비효과적인 조력방법

어떤 가정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자녀를 돕고자 하는 부모의 선의의 행동이 역효과를 낳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부모의 선의의 행동에 대한 역기능적인 측면은 자녀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자녀의 미성숙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4) 다세대적 관점(the multigenerational perspective)

다세대적 관점이란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관계패턴과 갈등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모 각자의 원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가 부모의 원가족 내의 관계패턴이나 미해결된 문제와 갈등과 연결시켜 그 관련성을 조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개념이다. 즉, 미분화된 자기가 형성되어 그 개인이 증상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2세대의 과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대적 전수의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이해는 부모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담자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좀더 수용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다.

### 5) 부모역할 효능성 향상(parental empowerment)

청소년 상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수준을 넘어 좀더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상담자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요구된다.

### 요약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청소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발달단계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가족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서적 욕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모는 적극적으로 가정내 위계질서를 잘 정립함은 물론이요 부모로서 엄한 측면과 부드러운 측면을 공유해야 하므로 부모 역할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발달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으로 볼 때 자녀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자체가 상호연결성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잘 다루면 청소년의 건강성이 향상되며 동시에 행동상의 문제가 감소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문제는 부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음 역시 가족적 접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권미란 역(2000). 가족 이해를 위한 가계도. 교문사  
김유숙(2000). 가족상담. 학지사

가족치료. 학지사

- 김진숙 외 (1999). 가족상담 기법 연구 III. 한국청소년 상담원
- 박태영(2001). 가족치료 이론의 적용과 실천. 학지사
- 송성자(2002).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 송정아·최규련(1997).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도서출판 하우
- 이영분·김유숙 역(1994). 가족분석가계도. 홍익제.
- 이정연 역(2003). 부부상담과 치료. 시그마프레스
- 이정연·정혜정 역(2004). 청소년기 부모상담. 시그마프레스
- 허남순·노혜련 역(1998). 해결을 위한 면접. 학문사
- Barker, P.(1986). Basic Family Therapy. New York:Bla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 E. A. Carter & M. McGoldrick(1980).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 학교 폭력 · 가정해체 아동청소년의 사례연구

## 소 유 경

- 전남대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서울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조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 학교 폭력 · 가정해체 아동청소년의 사례연구

## 소 유 경

- 전남대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서울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조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이혼, 편모, 편부, 양부모”, “왕따, 따돌림”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만큼 학교폭력과 가정해체는 우리사회에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흔한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 넘기기에는 그 심각성이 크다. 가정의 붕괴는 작게는 지역사회의 불안, 나아가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인이 되기전 건강한 성격과 정서를 발달시키고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또래들로 부터의 괴롭힘 경험은 학업저하, 정서장애, 자퇴, 자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학교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폭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회의 기본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자는 논의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거시적인 접근 보다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사례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학교 폭력과 해체가정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 I. 심리평가의 정의 및 활용

- 심리검사는 심리적 현상에서의 개인차를 비교하고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적·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과정
- 개인내, 개인간 비교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 II. 심리치료의 정의 및 활용

- 심리치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한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와 필요한 치료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치료자로 구성되며, 구조화된 방 혹은 비구조화된 방법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이다.

1. **개인**과 **집단 심리치료**: 집단치료는 많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선택되지만, 집단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집단은 개인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는 사회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치료는 또한 덜 위협적이며 또래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새주고, 성인 치료자와의 일 대 일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더욱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 형태의 심리치료가 보다 보편적인 개입방식이다.(사회기술훈련, 또래관계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2. **놀이치료** : 놀이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양식이다. 이는 아동발달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일치한다. 치료 양식

으로서의 놀이는 언어능력이 낮은 아동에 대한 해결책이다. 치료자는 추상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놀이를 이용한다.

3. **부모훈련** :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이 치료에 의뢰되는 것은 아동의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에 달려있다는 관찰과도 일치한다. 예, 인지-행동적 치료와 자조 집단을 통한 개입: 양육기술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관리와 분노조절 훈련, 인지적 재구조화(예, 아동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는 것)등을 다룬다. 자조 집단들은 비용이 적게 들며 부모를 위한 지지체계를 수립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 **약물치료** :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 행동장애에 적용되는 개입방법이다. 약물치료는 다른 형태의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분과 사고과정 혹은 외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항정신성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약물치료(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항정신성 약물은 신경전달물질의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치료효과를 가져온다.

### III. 사 례

<학교폭력>

-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57개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설문  
에 응답한 학생 중 24.3%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초, 중, 고교생 6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정도인 48.1%가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30% 정도의 학생들이 ‘지난 6개월 사이 1번 또는 2번 이상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1998년에 접수된 상담요청자 342명 중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148명으로 나타나서 전체 상담요청자의 43.3%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례 1. “따돌림을 당한 후 우울증상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

### 사례 2.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후 불안증상을 보이는 해체가정의 여아”

#### <가정해체>

- 지난 20년간 가족규모의 변화는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1998년 조사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975년 6인 이상의 가구가 40.7% 였던 반면 1995년에는 5.5%로 크게 줄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3.3명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인 이혼율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혼건수의 증가는 총인구수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혼인 건수의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에 4만 2천여건에 불과하던 이혼건수가 1998년에는 12만 3천여건으로 증가하여 2.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를 보면 1985년 10.2%, 1990년 11.2%, 1995년 16.2%, 1997년 24.0%로 결혼 4쌍당 1쌍 꼴로 이혼하고 있다고 한다.

### 사례 3. “부모의 이혼과 모의 재혼으로 애정욕구의 좌절을 경험한 남아”

### 사례 4. “부모 이혼 후 양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남매”

### 사례 5. “부모의 이혼·재결합 후 손가락 빨기와 야뇨증을 보이는 여아”

# 가정해체와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대안

박경현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도봉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가정해체와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대안

박경현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도봉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IMF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가정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교육부와 민간단체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느라 연일 신문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가정해체와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학교현장에서 부적응학생, 빈곤학생 등을 면담하면서 발견한 사실과 개입했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 가정해체와 폭력 등 청소년의 생활

### 1. 가정해체의 현황

지난 2003년은 제2의 IMF라 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었으며 IMF 이후로 가정해체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은 아이들의 생활의 등지이자 가장 기본적인 양육환경으로서 가정을 흔들고 있으며 그 안의 아이들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 강북지역 변두리의 한 학교의 학생 가정환경 조사결과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A중학교의 학생현황 (2005년)

학년	1	2	3	계
한부모/조손부모/소년소녀가장/결합 가정학생수	47	39	37	122
중식지원대상학생수	42	39	39	120

편부, 편모, 부모별거, 부모 외의 친척어른과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어른 없이 아이들만 사는 가정을 합한 경우가 전교생 1230명 중 약 10%인 122명이며 학년이 낮아질수록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05년만이 아니라도 2000년 이후 가정해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한 반에 약 1/3의 학생이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학년초에 담임교사가 파악한 것으로 학생들이 감추고 있거나 주민등록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상이혼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극빈가정을 나타내는 지수가 될 수 있는 중식지원대상 학생수는 작년보다 지원이 줄어 그 대상학생수도 감소되었는데 120명으로 해체가정 학생수와 비슷하며 이 가운데에는 많은 수의 해체가정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저소득한부모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교사들이 추천한 학생을 면담하다가 친구로 따라온 아이들이 자기도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하여 조사해보면 담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중산층 내지 중하류층의 경우 이혼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이미 악화될 때로 악화된 이후인 경우가 많으며 이혼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본다. 따라서 많은 경우 중산층 이하에서 이혼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자녀양육을 맡게 된 한부모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고 자녀인 학생의 양육환경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와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1990년대 후반 심화된 빈곤이 2000년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가족 해체와 노인 가구수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의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200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 빈곤율을 보면, 여성가구주 구성원의 절대빈곤율은 1991년 31.3%에서 1996년 8.7%로 떨어졌다가, 2000년 12.7%로 올라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에 비해 2~3배의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는 것이다. 이는 최근 빈곤문제와 가정해체의 관계에서 이혼한 모자가정에서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가정해체와 청소년의 방황 - A양의 경우>

미장기술자인 아버지는 IMF 이후에 거의 일거리가 없어졌고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다, 견디다 못한 엄마는 남매를 두고 이혼을 하였다. 상담하게 된 때는 학생이 중3이었고 2년 째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건강까지 망가진 상태였다.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간 엄마는 재혼하였지만 우울증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겹쳐 자주 전화하고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 내담자인 여학생은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3이 되면서 주변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어울려 심한 방황을 하게 되었다.

이 학생의 경우는 빈곤, 이혼으로 인한 배신감, 무능한 부에 대한 불만, 부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상실, 가사의 부담, 엄마의 지나친 불안과 간섭 등이 아이를 괴롭히며 집밖으로 내몰고 있었다. 게다가 낮은 학업성적은 아이의 학교생활을 더욱 괴롭게 했다. 결국 이 학생은 학업은 뒷전으로 하고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외박을 하고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 2. 아동학대와 방임의 실태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거나 굶기는 등의 형태를 떠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끼니를 굶기거나 돌보지 않는 등 방임으로 신고된 학대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학대건수	2105	2478	2921	3891
방임건수	672	814	965	1367

※ 2005년 5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함

한편 2004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반기 아동학대 사례별 유형실태 자료를 보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는 전체 학대건수 중 각각 169건, 136건으로 10.6%, 8.5%이다. 반면 방임이 545건으로 34.2%나 된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가 총 608건으로 3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중에 방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반기 아동학대 사례별 유형실태(단위: 건)	
계	 (1417) (2003년 1월 ~ 6월) (1591) (2004년 1월 ~ 6월)
중복학대	 (558) (2003년 1월 ~ 6월) (608) (2004년 1월 ~ 6월)
방임	 (445) (2003년 1월 ~ 6월) (545) (2004년 1월 ~ 6월)
신체학대	 (183) (2003년 1월 ~ 6월) (169) (2004년 1월 ~ 6월)
정서학대	 (94) (2003년 1월 ~ 6월) (136) (2004년 1월 ~ 6월)
성학대	 (87) (2003년 1월 ~ 6월) (84) (2004년 1월 ~ 6월)
유기	 (50) (2003년 1월 ~ 6월) (49) (2004년 1월 ~ 6월)

2003년 1월 ~ 6월     2004년 1월 ~ 6월  
 ※데이터뉴스 2004년 8월 24일자 기사 중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함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유형을 보면 이혼이나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편부가정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가정이 25%, 편모가정(12.3%), 재혼가정(8.4%), 친인척 보호(5.8%), 동거가정(4.8%)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없는 가정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작년에 A 중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서 부모에게 맞거나 욕을 듣는 신체, 정서학대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이들은 자주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상당한 예를 들면 늦게 들어왔다고 여학생을 밤에 벗겨서 내쫓는 경우, 아버지가 가족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 경우, 엄마가 마구 꼬집고 때려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가 한부모가정 학생이었으며 생활고로 인한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아이들까지 맞아서 이튿날 학교에 못 오는 경우들도 많았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집계한 바 지난 해 가정폭력은 총 13,770건이었는데 유형별로는 아내학대가 83.4%였고 다음은 남편 학대 2.1%, 노인학대 1.7%, 아동학대는 0.4%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내학대 사례의 60% 가량은 아동학대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연습뉴스 2005년 4월 29일자).

한편 꼭 가난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맞벌이라서 또는 한부모의 생업 때문에 혼자서 지내야하는 아이들, 즉, 방임이라는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은 너무나 많다. 이들은 가정에서 지원해야할 마땅한 학업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방에 처박혀서 TV나 인터넷과만 소통하다가 사회와 점점 격리되어가는 ‘히키코모리’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부모가 들어오는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면서 또 다른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 또, 부모가 늦게 들어오는 빈 집은 아이들에게 흡연, 음주, 성관계 등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비행의 아지트가 되기도 한다.

<방임의 사례 - B군의 경우>

1학년인 이 학생은 입학하자마자 잦은 지각과 결석, 교사가 물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여 의외되었다. 알고 보니 혼자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엄마와 둘이 살다가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겨 따로 동거를 하면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된 경우였다. 엄마는 같이 살게 된 남자분이 무서운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친 아버지는 아이를 낳은 뒤 바로 헤어져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이 학생은 라면, 빵 등 인스턴트 식품을 수시로 먹고 좁은 반지하방에서 컴퓨터만 마주하고 살아서 비만한 체격이었다. 미용실을 하는 엄마는 가끔 찾아온다고 했지만 냉장고에는 김치, 된장통 뿐이었고 방에는 이불과 옷가지, 책 등이 가득 널려있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보니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준비물이나 숙제, 소풍 따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친구도 사귀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을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 학생만 혼자서 벽을 본 채로 웅크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 3. 가정해체와 양육태도

이상에서 볼 때 가정해체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장애요인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회적 빈곤이 계층별로 고착화되고 대물림되는 오늘날, 부모의 빈곤,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실직, 만성질환 등으로 한 번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맨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러한 빈곤이라는 기본층 위에 이혼, 별거 등을 맞게 되면 가정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

경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2004년 아동복지학회에서 서울여대 홍순혜교수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부모의 이혼으로 낮아진 경제수준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혼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매개로 모든 양육행동, 즉 친밀감과 합리성, 과잉보호, 통제, 방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혼은 가정의 경제 수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성적은 떨어지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성은 증가했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합리성은 낮아지고 과잉보호, 통제, 방임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양육행동은 다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은 경제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수준이 높으면 이혼 가정이라도 부모들의 양육 행동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아동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단순히 이혼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폭력 등의 비행으로 치닫는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여기에 빈곤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될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빈곤과 이혼이라는 가정의 상황이 겹쳐질 때 결국 부모 또는 모는 직·간접적으로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양육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전에 빈곤가정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빈곤대책과 함께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과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 학교폭력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폭력사건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호소, 대안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폭력의 잔인성과 비행의 진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요즈음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책들은 누가 봐도 미봉책이며 부실한 느낌을 준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과연 그렇게 패심한 범죄자들인가? 아니다. 그들도 역시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 경찰청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학생 중 폭력서클 가입자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48%)' 고 답했다. 또한 86%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매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매일경제 2005년 4월 12일). 결국 어린시절 가정에서부터 '폭력의 모델링'이 시작되어 자기도 모르는 새 폭력이 '인지화, 내면화'돼 버리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을 통해 학습한 아이들은 갈등해결방법으로 손쉽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서 힘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아내학대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잠재되었다가 자기표현이 가능해지는 청소년기에 증상으로 노출되는데, 특히 그 문제는 학교적응장애, 폭력, 비행, 가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계선성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표출된다고 한다(Breslau, 1991, Horowitz 1995; 김정옥 장덕희, '가정폭력이 청소년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99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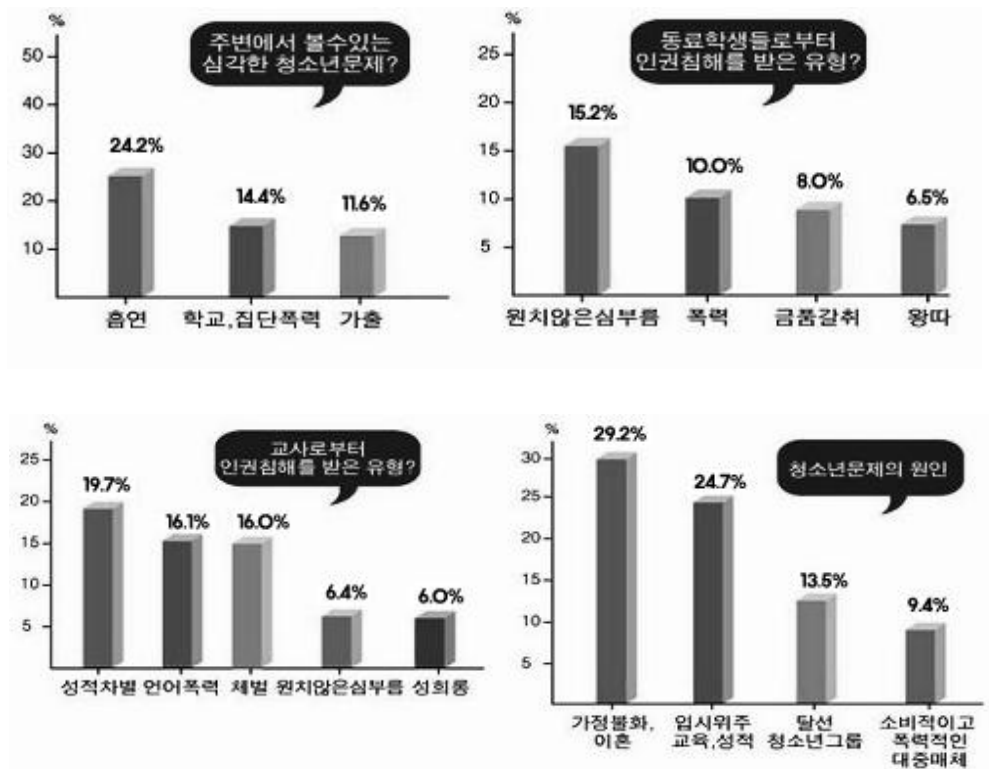
폭력을 가해한 학생들 역시 피해학생과 똑같이 성인들의 애정과 관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성인의 보호 하에 자라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 중 31.2%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5.1%)보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 중 가해자의 역할(18.0%)을 하는 경우도 일반학생들(4.9%)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1월 13일자 보도자료). 즉, 가정해체와 빈곤, 양육태도(방임 등) 등이 결합하여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아동에 대한 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청소년들의 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청소년기가 되어 사춘기적 반항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이 잦아지면 그만큼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게 되며 중학교 이상은 교사들의 체벌도 강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학급당 30~ 40명 안팎의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쉽사리 험한 말과 적절한 체벌로 분위기를 잡아야만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길들여진 학생

들은 매를 맞거나 모욕적인 체벌을 당해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생간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보다 교사에게 당한 폭력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2004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지역의 18개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의 ‘청소년 인권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학생들은 39.7%만이 동료학생들로부터 원치않은 심부름이나 폭력, 금품갈취, 왕따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학생은 총 64.2%로 성적에 의한 차별, 언어폭력, 체벌, 원치않은 심부름, 성희롱 등을 예로 꼽았다. 이들은 또한 청소년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불화와 이혼(29.2%)이며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을 그 다음(24.7%)으로, 그리고 탈선청소년그룹(13.5%),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매체(9.4%)를 꼽았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http://www.1318virus.net> 2005년 3월 21일 게재내용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 등 성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을 목격한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지적했듯이 이혼 뿐 아니라 가정불화는 아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비행과 탈선을 부추기는 정서적 피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에게는 폭력행사에 대해 징계하고 잘못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비폭력적인 대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인지변화 프로그램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양육, 교육방식도 비폭력적으로 같이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폭력가해학생 - C양의 경우>

친구와 후배들에게 욕설, 헐박, 뺨뺨기, 때리기 등과 같은 폭력으로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다. 공부는 중상위권이지만 이러한 위협적인 태도는 일반학생들 뿐 아니라 같은 노는 아이들이나 후배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생활지도부에서 부모를 소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튿날 C양은 결석했다. 아프다고 했다.

다음 날 학교에 온 C양을 만났을 때 온몸에 뱀이 휘감은 듯 피멍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에게 혁대로 맞았다고 했다. C양의 아버지는 “딸을 너무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무섭고 화끈한 성격이라서 한 번 잘못 하면 전혀 봐주는 것 없이 제대로 혼을 낸다.”고 하였다.

한편 오빠 역시 C양처럼 비행등을 일삼다가 고2가 되어서야 달라져서 공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맞고 내쫓기곤 했다고 것이다.

아버지는 외모와 태도만으로도 보통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 II. 가정해체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의 시각과 대처 방안

최근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 단체들이 제시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로 전문상담교사 파견, 학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제도, 병영체험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시작하여 현재 전국 96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는 1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개별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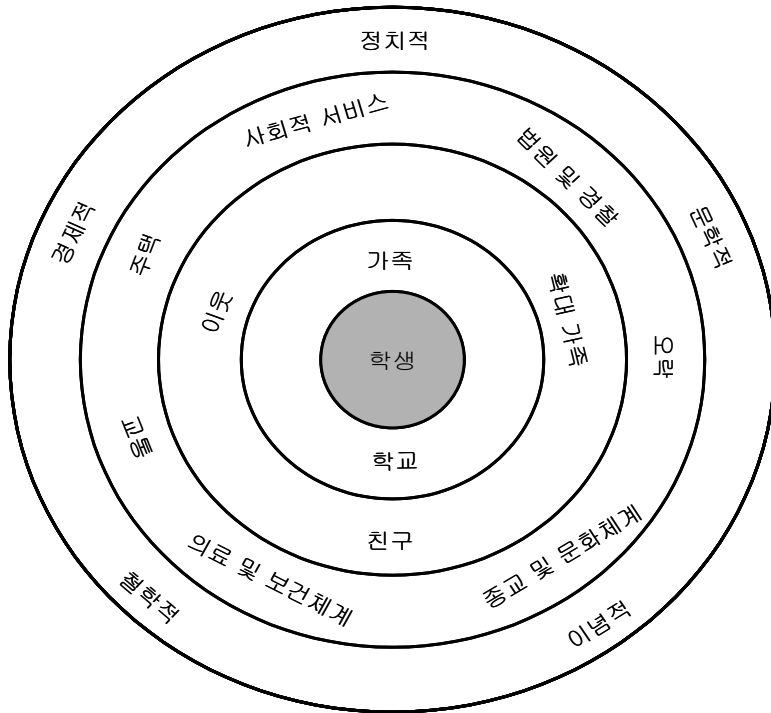
교에 상주하면서 폭력예방 및 학생 복지향상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의 방법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실 1993년 경 복지관과 대학들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계속된 서울시교육청의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인 효과들이 거듭 확인되었고 마침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 데 힘입은 것이며 2003년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빈곤으로 인한 교육불평등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만여 개의 학교 중 겨우 2%인 약 200개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그 성과는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문제와 학교폭력문제는 그 문제의 양상 역시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만큼 단편적인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생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효과적이다. 이는 선진외국에서 폭력을 포함한 비행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시행된 149개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하나의 개입전략이 별도로 이루어졌을 때는 학생들의 비행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학생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생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학급의 사회적 능력향상을 위한 개입, 학급운영에 대한 교사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비행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Gottfredson, 1997; 노혜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접근방안과 적용사례’ 2005년 4월 27일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활용 대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재인용)

## 1. 학교사회복지의 관점

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 학생인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동시에 교육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학생을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생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또한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각 개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회들을 제공하고 조정한다.

< 학교사회복지사의 생태체계적 관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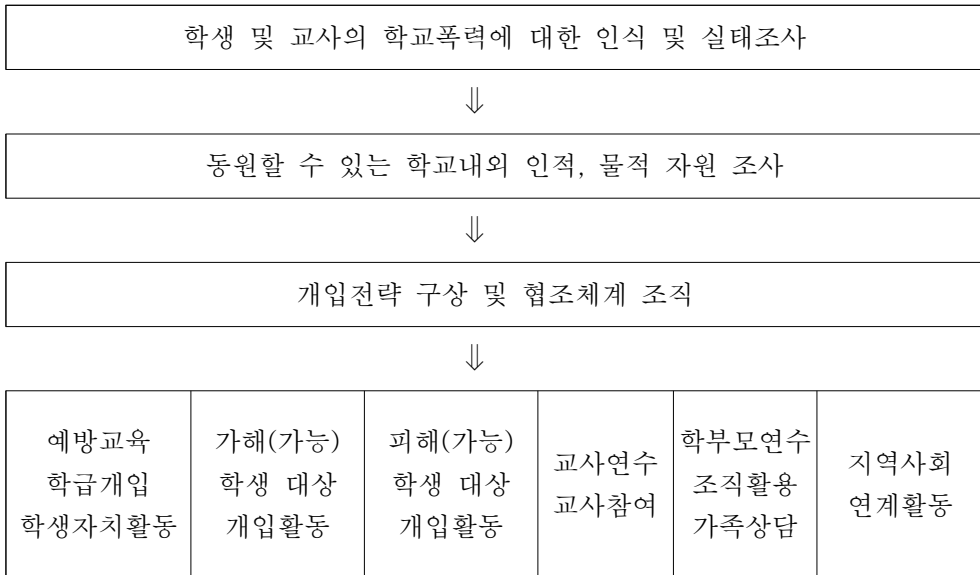
2.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적 대응방법

학교폭력 등의 비행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의 이분법적 구도로만 보지 않는다. 학생 개인뿐 아니라 학교 전체를 체계적 관점에서 보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변화전략을 수립하여 활동한다. 또한 하나의 폭력사안으로 집단지도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학생별로 개별사정을 통해 개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하여 활동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폭력이라는 한 가지 비행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행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환경 및 교사, 친구관계 나아가 학교 및 사회의 문화에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모든 것을 보는 데 있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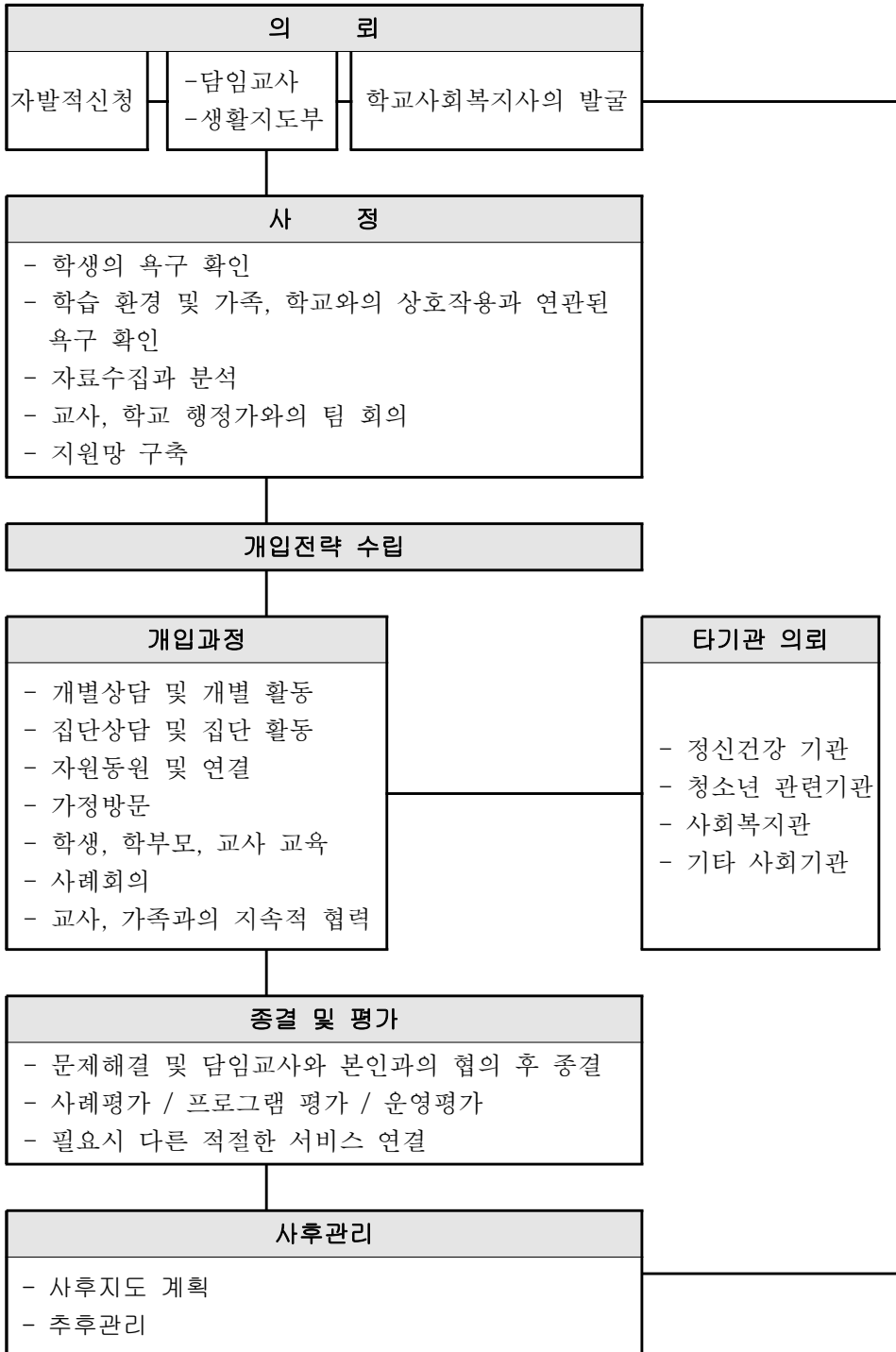


동시에 적용한다.

<거시적인 접근의 흐름도>



<개별 개입의 과정>



### 3.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사례 (D 양, 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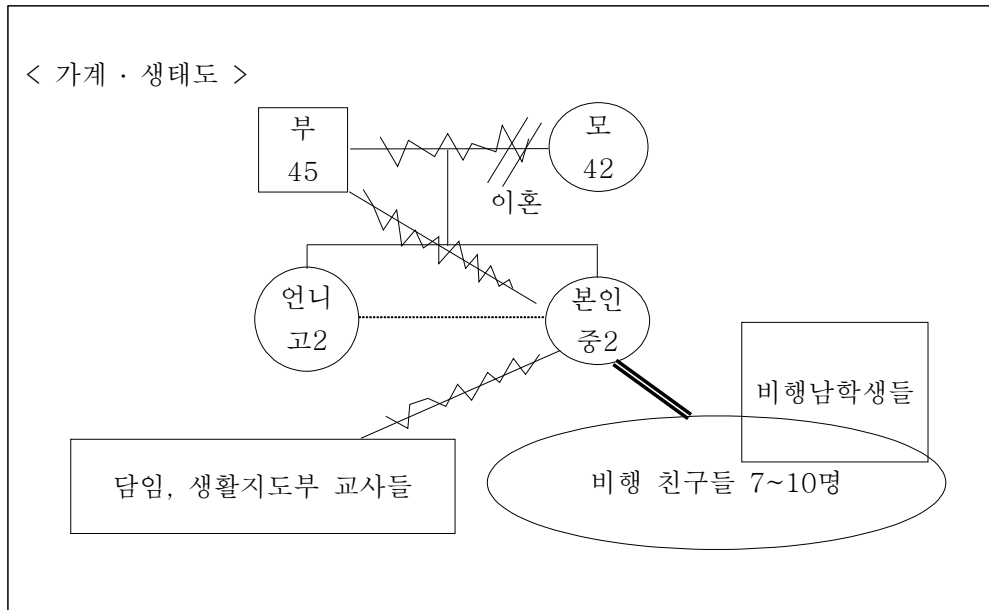
#### 의뢰(문제행동)

흡연, 음주, 외모불량, 수업태만, 문란한 이성교제 등의 문제를 보였으며 정서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하급생에게 신고식을 받고, 돈을 상납 받아 유흥비로 쓰는 등의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 사정(가정환경, 학교생활)

약 1년 전인 초등학교 졸업 무렵 부모가 이혼 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다. 술을 자주 마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 고2인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늦게 들어온다.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방황이 시작되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단결석이 늘어났다. 방과 후에는 불량스런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



#### 개입 기간

- 1) 집중 개입 단계: 4월 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1학기 동안).
- 2) 느슨한 개입단계: 2학기 동안

3) 사후관리 단계: 이듬해 4월부터 11월까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개입 내용

- 1) 개별상담과 행동수정
- 2) 교실카페를 통한 학교내 안식처 제공과 교우관계 확장
- 3) 집단프로그램
  - ① 금연프로그램
  - ② 미술작업 프로그램
  - ③ 성인 후원자 결연 문화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 ④ 자연 속 사회성향상 캠프
- 4) 가정방문과 학부모상담을 통한 가정환경의 개선
- 5)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
- 6)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동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체계에 다각도로 개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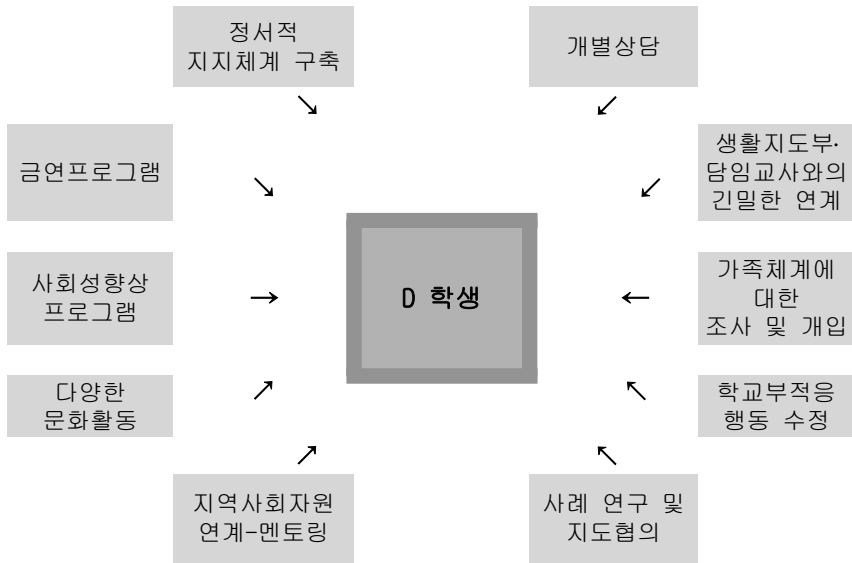
#### < 사례개입내용 >

표적문제	개입체계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		개입성과
		문제행동	개입내용	
학교폭력 등의 비행 문제와 학교 생활 부적응	개인	· 정서불안 · 흡연 · 이성교제 · 폭력행동 · 학업태만	· 상담과 여가활동 · 인지행동수정 프로그램 · 금연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 후 담임과 친구들의지지, 위로 · 학부모상담을 통해 가정의지지 회복 · 근태개선을 위한 일일 점검 · 자기발견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 심리정서적인 안정 · 표정이 밝고 외모가 단정해짐 · 금연, 이성교제 안정화 · 성적 향상, 근태개선 · 교사들과 관계 개선 · 진로확정, 고교 진학 · 폭력행동 없어짐
	가정	· 가정폭력 · 무관심과	· 가정방문과 학부모 상담	· 가정폭력 감소 · 학생의 귀가시간이 일러지고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정서, 심리적 상태 이해를 위한 설명</li> <li>· 양육방식 개선을 위한 조언</li> <li>· 가정폭력 자제 요구</li> <li>· 관심과 사랑의 표현 요령 조언</li> <li>· 교복구입비 등 장학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박이 없어짐</li> <li>· 부, 자매간 가족관계 개선</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인화</li> <li>· 수업의 부담감</li> <li>· 교사들을 미워하고 지도에 반항심</li> <li>· 불량친구 외에 친구 관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재 및 학생옹호 활동</li> <li>· 학생에 관한 긍정적 변화 발견하여 칭찬</li> <li>· 교실카페 운영을 통한 학교 내 안식처 제공, 안전한 학생간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들과 관계 개선</li> <li>· 후배, 다른 친구들(피해자)과 사귀(교실카페, 캠프)</li> <li>· 생활지도부 지적횟수 감소 -&gt; 중3때는 아예 모범생이 됨</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비행</li> <li>· 건강한 여가활용을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멘토와의 문화멘토링 프로그램 제공</li> <li>· 금연 프로그램시 지역 사회 정화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 향상</li> <li>· 성인과의 건강한 의사소통, 대인관계 발전</li> <li>·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정서함양</li> </ul>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 개입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사례개입내용 >



**개입결과**

이렇게 개별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꾸준히 지도한 이후 학생은 잦은 무단결석이 없어졌고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방과후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3학년이 되자 공부에 열중하여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외모나 말투도 달라졌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담임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사랑을 받으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언제 이 아이가 그런 비행학생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말**

학생: “아빠가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술을 먹고 언니와 나를 때리고 내쫓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학교에 와도 공부가 잘 안 되요. 선생님들은 한 번 걸리면 그 애들만 짝어놓고 혼내니까 학교도 오기 싫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고 나면 좀 마음이 시원해요. 고등학교에 가서 사회사업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

아버지: “선생님들을 만나면 죄인이 됩니다. 거의 야단맞는 기분인데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인 것 같군요. 부끄럽지만 가정방문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이를 부모 못지 않게 이해하고 이끌어주어 고맙습니다. 한참 방황할 때 부모로서 잘 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아이를 괴롭힌 꼴이 되었군요. 하지만 아이도 이제 달라졌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담임: “아이 문제로 걱정도 되고 스스로 무력한 교사인가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학생을 가정환경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하는 법이나 사귀는 법을 배워서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 때문에 교사인 나도 많이 변했다.”

생활지도부 “징계를 하더라도 담임이나 수업, 업무 때문에 계속 아이를 지도할 겨를이 없는데 사회복지실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한쪽에서 엄하게 혼내면 누군가 보듬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또 학교 외부의 여러 기관, 사람들, 경제적 지원 등을 연계해서 아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아이가 복이 많은가보다.”

### III. 맺는 말

학교폭력 문제를 폭력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찾다보면 자칫 가해학생을 표적으로 한 처벌적이고 통제적인 대책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학교가 점점 더 위험하고 두려운 곳으로 여겨지게 되고 교사는 제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여겨 항상 감시하고 범죄를 색출해서 퇴치해야하는 고통스런 역할이 강요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학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곳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먼저 빈곤과 가정해체로 상처받은 아이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쉽게 변하리라 기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꾸준히 환경과 함께 아이들을 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꼭 필요한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차차 확대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과 학교이다. 부모가, 교사가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 큰 사회가 변해야 한다. 힘센 자가 영웅시되고 경쟁과 폭력을 가르치는 문화에서 폭력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문화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를 비롯하여 타 전문직과 단체들, 모든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가정해체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할 것이다.



#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서의 법적보호장치

문홍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서의 법적보호장치

문홍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1. 서론

가정과 학교는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는 터전이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의 장소이다. 가정과 학교가 건전하지 않고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과 학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가급적 법적인 간섭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의 중요성과 함께 현대 가정과 학교사회의 천태만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긴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반형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條(目的) 이 법은 家庭暴力을 예방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家庭을 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家庭의 보호와 유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個人이 家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家庭과 家族制度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 (國家 등의 責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

置를 취하여야 한다.

1. 家庭暴力에 관한 申告體制의 구축 및 운영
2.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研究, 教育 및 弘報
3. 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운영 및 기타 被害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家庭暴力의 實態 調査
5.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法令의 정비 및 각종 政策의 수립 및 施行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豫算상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機構과 公務員을 두어야 한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및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家庭暴力關聯相談所와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에 대하여 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第5條 (相談所의 設置·운영)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關聯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社會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3. 行爲者에 대한 告發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法律救助公團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引渡받은 被害者의 임시보호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家庭暴力 및 被害에 관한 調査·研究

第7條 (保護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の 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 (保護施設의 業務)

①保護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第6條 各號의 업무
2. 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被害者의 身體的·精神의 安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한다.

第9條 (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18條의 보호를 할 수 없다.

第13條 (經費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16條 (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8條 (治療保護)

①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가족·친지 또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1. 保健에 관한 相談 및 지도
2. 身體的·精神의 被害에 대한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에 관한 사항

第2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이 法에 의한 申告 또는 認可없이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 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의 義務를 위반한 者

###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임시보호기간 등)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2일이내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시행규칙 제6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영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 4.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行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產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配偶者(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配偶者 關係에 있었던 者  
 나. 自己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關係(事實上의 養親子關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者  
 다. 繼父母와 子의 關係 또는 嫡母와 庶子의 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者  
 라. 同居하는 親族關係에 있는 者
3. "家庭暴力犯罪"라 함은 家庭暴力으로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가. 刑法 第2編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중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60條(暴行, 尊屬暴行)第1項·第2項, 第261條(特殊暴行) 및 第264條(常習犯)의 罪

나. 刑法 第2編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중 第271條(遺棄, 尊屬遺棄)第1項·第2項, 第272條(영아유기),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및 第274條(兒童酷使)의 罪

다. 刑法 第2編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중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第279條(常習犯)(第276條, 第277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0條(未遂犯)(第276條 내지 第279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라. 刑法 第2編第30章 脅迫의 罪중 第283條(脅迫, 尊屬脅迫)第1項·第2項, 第284條(特殊脅迫), 第285條(常習犯)(第283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6條(未遂犯)의 罪

마. 刑法 第2編第33章 名譽에 관한 罪중 第307條(名譽毀損),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第309條(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毀損) 및 第311條(侮辱)의 罪

바. 刑法 第2編第36章 住居侵入의 罪중 第321條(住居·身體 搜索)의 罪

사. 刑法 第2編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중 第324條(強要) 및 第324條의 5(未遂犯)(第324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아. 刑法 第2編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중 第350條(恐喝) 및 第352條(未遂犯)(第350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자. 刑法 第2編第42章 損壞의 罪중 第366條(財物損壞등)의 罪

차. 兒童福祉法 第29條第8號를 違反한 罪

카. 가目 내지 자目的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

4.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 및 家庭構成員인 共犯(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

5.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6.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대상이 되는 事件을 말한다.

7. "保護處分"이라 함은 法院이 家庭 保護事件에 대하여 審理를 거쳐 行爲者에게 과하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말한다.

8.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適用한다.

## 第2章 家庭保護事件

### 第1節 通則

#### 第4條 (申告義務등)

①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搜查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教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이상의 老人 기타 正當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  
碍人福祉法에 따른 障碍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에  
따른 家庭暴力 관련 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  
한 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 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申告한 者(이  
하 "申告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申告行爲를 이유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  
니된다.

第5條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進行중인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現場에 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  
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被害者의 家庭暴力 관련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 引渡(被害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被害者의 醫療機關 引渡

4. 暴力行爲의 재발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를 申請할 수 있음을  
통보

第6條 (告訴에 관한 特例)

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를 告訴할 수 있다. 被害者의 法定代  
理人이 行爲者인 경우 또는 行爲者와 공동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경우  
에는 被害者의 親族이 告訴할 수 있다.

② 被害者는 刑事訴訟法 第224條 規定에 불구하고 行爲者가 自己 또는 配偶  
者의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이 告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被害者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의 申  
청이 있으면 檢事는 10日 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第7條 (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司法警察官은 家庭暴力犯罪를 신속히 搜查  
하여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은 당해 사건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  
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

第9條 (家庭保護事件의 處理) 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爲을 고려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0條 (管轄)

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의 行爲地·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第11條 (檢事의 送致)

①檢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家庭暴力犯罪와 그 외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第12條 (法院의 送致) 法院은 行爲者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의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3條 (送致時의 身柄處理)

①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 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 法院이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行爲者를 관할 法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刑事訴訟法 第92條,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拘束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拘束令狀의 效力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第14條 (送致書)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を 보내야 한다.

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의 姓名·住所·生年月日·職業·被害者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15條 (移送)

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즉시 다른 管轄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의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 (保護處分の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분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 (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の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人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을 미친다.

第18條 (秘密嚴守등의 義務)

①家庭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 및 그 執行을 담당하거나 이에 關여하는 公務員, 補助人 또는 相談所등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 및 第4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者(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②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行爲者, 被害者, 告訴人·告發人 또는 申告人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敎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事實을 행위자인 親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

第2節 調査·審理

第19條 (調査·審理의 方向)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는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知識을 活用하여 行爲者·被害者 기타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과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을 밝혀서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處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 (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爲하여 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 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1條 (調査命令) 判事は 調査官에게 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審問이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第22條 (專門家의 意見照會)

① 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學者·社會福祉學者 기타 관련 專門家에게 行爲者·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精神·心理狀態에 대한 診斷所見 및 家庭暴力犯罪의 原因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結果를 參작하여야 한다.

第23條 (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査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24條 (召喚 및 同行令狀)

① 判事は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 判事は 行爲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5條 (緊急同行令狀) 判事は 行爲者가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6條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行爲者의 姓名·生年月日·住居, 行爲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判事가 署名·捺印 하여야 한다.

第27條 (同行令狀의 執行등)

① 同行令狀은 調査官이나 法院의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 (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 法院은 行爲者의 所在不明으로 인하여 1年이상 同行令狀을 執行하지 못한 경우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 法院은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그 事實을 즉시 行爲者의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8條 (補助人)

① 行爲者는 자신의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辯護士, 行爲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 相談所등의 相談員과 그 長은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辯護士가 아닌 補助人은 金品·響應 기타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法院은 行爲者가 刑事訴訟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行爲者의 補助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

第29條 (臨時措置)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의 원활한 調查·審理 또는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行爲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住居 또는 占有하는 房室로부터의 退去 등 隔離

2. 被害者의 住居, 職場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接近禁止

3.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

4. 警察官署 留置場 또는 拘置所에의 留置

②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行爲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行爲者가 法院에 引致된 때로부터 24時間 이내에 第1項의 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檢査 및 피해자에게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④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爲者의 補助人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人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行爲者가 지정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辯護士 등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으며 第49條第1項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1號·第2號의 隔離 및 接近禁止期間은 2月, 同項第3號·第4號의 委託 및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그 期間의 延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각 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⑥第1項第3號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 등의 長에게 行爲者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民間이 운영하는 醫療機關 등에 대하여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醫療機關 등의 長에게 미리 告知하고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⑧判事는 第1項 各號에 규정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 調查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또는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⑩判事는 職權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臨時措置를 取消하거나 그 종류를 變更할 수 있다.

⑪第1項第3號의 委託의 대상이 되는 醫療機關 및 療養所의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0條 (審理期日の 指定)

① 判事は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判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1條 (審理期日の 變更) 判事は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者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2條 (審理의 非公開)

① 判事は 家庭保護事件의 審理함에 있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判事에 대하여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は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第33條 (被害者의 陳述權등)

① 法院은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人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を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法院은 審理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調査官에게 意見を 陳述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は 公正한 意見陳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被害者는 辯護士,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姊妹·戶主, 相談所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意見を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第34條 (證人訊問·鑑定·通譯·翻譯)

① 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을 命하며 通譯 또는 翻譯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通譯 및 翻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

다.

③ 證人·鑑定人·通譯人·翻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9.12.31>

第35條 (檢證·押收·搜索)

① 法院은 檢證·押收 및 搜索을 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 (協調·援助)

①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청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正當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7條 (不處分の 決定)

① 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거나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家庭暴力犯罪만을 대상으로 하는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告訴가 取消되거나 被害者가 處罰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意思表示를 한 때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習癖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제11조의 規定에 의하여 檢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管轄 法院에 대응하는 檢찰청의 檢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法院에 이송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8條 (處分の 期間등)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の 決定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送致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39條 (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護處分

第40條 (保護處分の 決定等)

① 判事は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接近하는 行爲의 제한
2. 親權者인 行爲者의 被害者에 대한 親權行使의 제한
3.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社會奉仕·受講命令
4.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保護觀察
5.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
6. 醫療機關에의 治療委託
7. 相談所등에의 相談委託

② 第1項 各號의 處分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 第1項 第2號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被害者를 다른 親權者나 親族 또는 적당한 施設로 引渡할 수 있다.

④ 法院은 保護處分의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檢査, 行爲者,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保護處分을 委託받아 行하는 保護施設, 醫療機關 또는 相談所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 第1項 第3號 내지 第7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行爲者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41條 (保護處分の 期間) 第40條 第1項 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의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同項 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은 1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第42條 (沒收) 判事は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第43條 (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 法院은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의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 保護處分의 執行에 있어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 및 精神保健法을 準用한다.

第44條 (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第40條 第1項 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45條 (保護處分의 變更)

① 法院은 保護處分이 行해지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하는 경우 종전의 處分期間을 합산하여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期間은 1年을,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期間은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處分變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검사, 행위자, 法定代理人, 補助人,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受託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_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02.12.18]

\_ 第47條 (保護處分의 終了) 法院은 行爲者의 性行이 矯正되어 정상적인 家庭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保護處分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護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終了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_ 第48條 (費用의 負擔)

①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 또는 第40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는 委託 또는 保護處分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한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爲者가 負擔할 費用의 計算, 請求 및 支給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4節 抗告와 再抗告

\_ 第49條 (抗告)

①第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延長 또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40條의 保護處分, 第45條의 保護處分의 變更 및 第46條의 保護處分의 取消에 있어서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



자,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家庭法院本院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の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檢事, 피해자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18>

③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 第50條 (抗告狀의 제출)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 第51條 (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管轄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の 決定을 할 수 있다.

#### 第52條 (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第53條 (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停止하는 효력이 없다.

第54條 (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55條(刑事訴訟法の 準用) 이 章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の 規定을 準用한다.

### 第3章 民事處理에 관한 特例

#### 第56條 (賠償申請)

①被害者는 家庭保護事件이 繫屬된 第1審 法院에 第57條의 賠償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 第26條第2項 내지 第8項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7條 (賠償命令)

①法院은 第1審의 家庭保護事件 審理節次에서 保護處分을 宣告할 경우 職權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金錢支給이나 賠償(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扶養에 필요한 金錢의 支給  
2.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에 있어서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합의된 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명할 수 있다.

③訴訟促進등에 관한特例法 第25條第3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8條 (賠償命令의 宣告)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

第59條 (申請의 却下)

①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할 수 있다.

③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일부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第60條 (不服)

①保護處분에 대한 抗告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家庭保護事件과 함께 抗告審에 移審된다. 保護處분에 대한 再抗告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抗告審에서 第1審 決定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變更할 수 있다.

③行爲者는 保護處分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제기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 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 7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의 棄却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訴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7日이내에 再抗告할 수 있다.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決定에 대하여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再抗告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第3項 및 第4項에 의한 抗告와 再抗告는 賠償命令의 執行을 정지하

는 效力이 없다.

第61條 (賠償命令의 效力과 強制執行)

① 확정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 있는 賠償命令이 기재된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強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 있는 民事判決 正本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 <개정 2002.1.26>

② 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확정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의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 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第62條 (다른 法律의 準用) 이 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과 民事訴訟法의 관련 規定을 準用한다.

#### 第4章 罰則

第63條 (保護處分の 不履行罪) 第4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行爲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2千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64條 (秘密嚴守등 義務의 違反罪)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補助人(辯護士를 제외한다), 相談所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年 이하 懲役이나 2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8條第2項의 報道禁止義務를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發行人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 기타 出版物의 著作者와 發行人은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5條 (過怠料) 正當한 사유없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하거나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則 <제5436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5. 결 론

그밖의 법적보호장치로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관하여는 그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적이나 퇴학을 탄원하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요구할 수 있

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라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 도움을 주신 분들

삼육대학교

조미숙 교수

경희대학교

오윤자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소유경 임상심리실장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박경현 회장

법무법인 로고스

문홍수 구성원변호사

자원봉사자

경희대학교 이정임 김정화

성균관대학교 이기호 이진영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